

광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520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D

원고보조참가인 A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남도현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28.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가단50120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68,653,21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53,2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4. 7. 광주지방법원 2020개회661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0. 6. 19.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후, 2020. 9. 28.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실, 이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선, 판사 김효진, 판사 이지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광주 북구 K 대 124.8㎡

2. 건물

소재지 : 광주 북구 K

건물내역 :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2.98㎡, 2층 56.6㎡,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38㎡. 끝.

